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01호
2022. 8. 8.(월)



목 차**◆ 자치법규****[조 레]**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844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8450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규 칙]

제4492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13
--------	-------------------------------------	----

[훈 령]

제1040호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14
제1041호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15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을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협력국을” 을 “디지털정책관” 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 을 “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국회협력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정연구에” 를 “지방분권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정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제4호 중 “도시형제조업 및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에” 를 “도시형제조업·뷰티·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5호로,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회의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심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호 중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계획에”를 “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간자유치 계획·협상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4.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7. 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단속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음·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호 중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미술관”을 “박물관·미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7호) 중 “박물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2.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및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정책의 수립, MICE 진흥 및 지역기반 관광에 관한 사항
2.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을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의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2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 의무, 약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의료 강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치구 행정·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 및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 및 사회문화·경제협력,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부속시설물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 등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9.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입체도시 조성 등”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등” 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3.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제목 “(푸른도시국)” 을 “(푸른도시여가국)”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푸른도시국장” 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원·산림 내 여가·문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물순환 관리, 토양오염 방지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 수질 보전,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한시기구) ①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을 두며, 주택공급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 민간 정비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등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에 한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음·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4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 를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 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 사업소 “라 한다)를” 를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이하 이 절에서 ” 센터 “라 한다)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소의” 를 “각 센터의” 로 한다.

제93조 중 “사업소에” 를 “센터에” 로 한다.

제12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별표2 중 “제54조제2항 관련” 을 “제56조제2항 관련” 으로, 별표3 중 “제72조제2항 관련” 을 “제74조제2항 관련” 으로, 별표4 중 “공원녹지사업소의” 를 “공원여가센터의” 로 같은 표 중 “제87조제2항 관련” 을 “제92조제2항 관련” 으로 하고,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5 중 “제99조제2항 관련” 을 “제104조제2항 관련” 으로, 별표6 중 “제105조제2항 관련” 을 “제110조제2항 관련” 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273(성수동)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조례 제72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제3항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4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남북협력추진단장” 을 “행정국장”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시민소통기획관” 을 “경제정책실장”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민협력국장” 을 “행정국장” 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문화본부장” 을 “디자인정책관” 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 국장급 공무원” 을 “푸른도시여가국 국장급 공무원” 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푸른도시국장” 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국장” 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장” 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푸른도시국장” 을 “푸른도시여가국장” 으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안전총괄실장” 으로, “보행친화기획관” 을 “안전총괄관” 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내 ‘공공자산 운용’ 에 관한 사무 신설(제5조)
 - ‘시·도간 교류 및 대외협력’ 사무는 기획조정실 → 행정국으로 이관(제13조)
- 경제정책실 내 ‘뷰티 산업 육성·지원’ , ‘국제교류협력’ 에 관한 사무 신설(제6조)
 -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사무는 경제정책실 → 행정국으로 이관(제13조)
- 복지정책실 내 ‘안심소득 추진’ 에 관한 사무 신설 (제7조)
 -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제12조)
- 도시교통실 내 ‘미래첨단교통’ 에 관한 사무 신설(제8조)
 - 철도계획 관련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철도건설 민자유치’ 에 관한 사무를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교통실로 이관(제52조)
- 기후환경본부 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등 기능 강화(제9조)
- 문화본부 내 ‘문화재 복원·관리’ 기능 강화 및 사무분장 정비(제10조)
 - ‘디자인 진흥’ 관련 사무는 문화본부 →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제14조의2)
-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 강화·추진’ 에 관한 사무 신설(제12조의2)
-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 에 관한 사무는 시민건강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제19조)

- 행정국 내 ‘지역공동체 지원’, ‘사회협력’, ‘시·도간 대외협력’,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각 분야별 협력 기능 일원화(제13조)
 - 행정국 내 ‘정보공개·문서·공인·기록물’ 관련 사무 삭제 (행정시스템 운영 기능 일원화를 위해 디지털·정보화 전담 기구로 업무이관)
 -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기능 강화,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신설(제15조)
 - 주택정책실 내 임대주택·청년주택 등 공급 기능 강화 및 조문정비(제16조)
 - ‘주거재생, 주거환경 정비’ 및 ‘한옥 보존진흥’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 주택정책실로 이관(제18조)
 - 녹색여가 시대 전환을 위해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제19조)
 -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관련 사무 신설
 - 물순환안전국 내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사무분장 정비(제20조)
 -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하고, 안정적 공원관리 및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제92조 및 제93조, 별표 4)
 -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라 각 4개 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조정
 - 감사·조사기능 일원화를 위해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제124조)
- 나. 자율신설기구 재편 및 존속기한 연장(제4조 및 부칙)
- 디자인·도시경관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정책관’ 신설
 -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기획조정실·행정국 등으로 이관
 - 기존 자율신설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2년)
- 다. 주택공급, 권역별 특화발전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제21조 및 부칙)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신설
 -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으로 설치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은 존속기한 만료(’22.10.31) 예정에 따라 폐지
 - ▶ 관련 기능은 행정국으로 이관

◆ 서울특별시조례 제844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562명”을 “10,5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95명”을 “4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04명”을 “226명”으로 한다.

같은 표 일반직 계란, 2·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전문경력관 소계란, 연구직 계란, 연구관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2·3급	26	21		1	3	1
4급	255	152	19	8	68	8
5급 이하 소계	10,241					
전문경력관 소계	128					
연구직 계	407					
연구관	63	5		34	24	
연구사	344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재편 및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분야 인력 충원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총 정원 변동 없음)

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직급 조정 (3급 △2 → 2·3급 +2)

나.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3급 +2명)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 (△1)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3)

다. 수상사업부(한강사업본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 (본청) 일반직 4급 △2 → (사업소) 일반직 4급 +2

라.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5급이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장기결원 감원(△3)

▶ 시립대학교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통계자료관리요원) △1 → 6급이하 +1 조정사항 포함

－ (연구직) 미술관·박물관 건립 업무 관련 증원(연구관 +1, 연구사 +1)

마.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6명)

－ 의회사무처 5급이하 +6명

바.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20명) 및 인력보강(+2명)

－ ‘인권담당관’ (본청) → 감사위원회(합의제) 산하로 이관(20명)

▶ (본 청)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합의제)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업무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인력보강(6급이하 +2)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0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균형개발위원회

- 가.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디지털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 마.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공간위원회

-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미래공간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디자인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2. 8. 19.자 시행 예정인 서울특별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시민협력국을 삭제함(제33조제1항제2호).

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남북협력추진단을 삭제함(제33조제1항제3호).

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중 푸른도시국의 명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조정함(제33조제1항제4호).

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중 시민소통기획관의 명칭을 홍보기획관으로 조정함(제33조제1항제5호).

마.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소관을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디지털정책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조정함(제33조제1항제8호).

바.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소관을 도시계획국, 디자인정책관, 미래공간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미래청년기획단,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조정함(제33조제1항제9호).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492호****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문위원(4급)란 중 “도시계획관리”를 “주택균형개발, 도시계획공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 및 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상임위원회 신설 및 명칭변경,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 전문위원 추가 및 명칭 변경(별표1)
 - (신 설): 도시계획공간 수석전문위원
 - (명칭변경): 도시계획관리 → 주택균형개발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40호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별지 제1호 서식 중 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항목 삭제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 서식 내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란 삭제

◆ **서울특별시훈령 제1041호**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8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관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시 법인을 말한다.

3.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시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항제3호의 노동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사업주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한다.

제5조(안전 및 보건확보) 사업주는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제6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장 등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8조(조직 구성) ① 시의 안전·보건 관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 ② 사업주는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지원 등 총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둔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조직·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인원·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본청은 시장, 직속기관은 기관장, 사업소는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한다.

- ②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시장 등 각 사업장의 조직계통상 최고 의사결정자는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업주는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각 부서에서 소속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5조(설치) ① 사업주는 법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제16조(구성 및 임기) ① 사업주는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구성·위촉한다.

1. 노동자위원

가. 노동자대표(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절차로 노동자 대표로 선출된 자)

나.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노동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를 포함하여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노동자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직무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논의 및 심의·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 외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② 사업주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제18조(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사업주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노동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19조(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사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노·사 동수인 경우에는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둔다.

④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 논의 등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제21조(회의 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에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2조(교육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3조(정기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동자 :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 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24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사업주는 신규로 채용된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노동자 : 1시간 이상

2.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8시간 이상

② 사업주는 작업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노동자 : 1시간 이상

2.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2시간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에 따른다.

제25조(특별교육) ① 사업주는 노동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노동자 : 2시간 이상

2.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동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기록·보존)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 및 내용
3. 교육담당자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30조(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주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32조(안전검사)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시

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안전인증)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기구·설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안전보건수칙)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수칙을 작성하여 노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는 안전·보건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노동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작업지휘자의 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 ② 사업주는 향타기나 향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안전점검) ① 사업주는 노동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노동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노동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41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노동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3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는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5조(질병자 근로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7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노동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49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위험성평가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노동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51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노동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52조(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

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53조(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장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제54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는 시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5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3. 작업장 순회점검
4. 관계수급인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 노동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56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수급인 등에 대한 시정조치) 사업주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노동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대표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8조(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59조(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시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시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60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사업주는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기록·관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노동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10장 보칙

제62조(제안창구 운영) ① 사업주는 시의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63조(포상)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등

제64조(문서기록보존) 사업주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 및 노동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이 규정을 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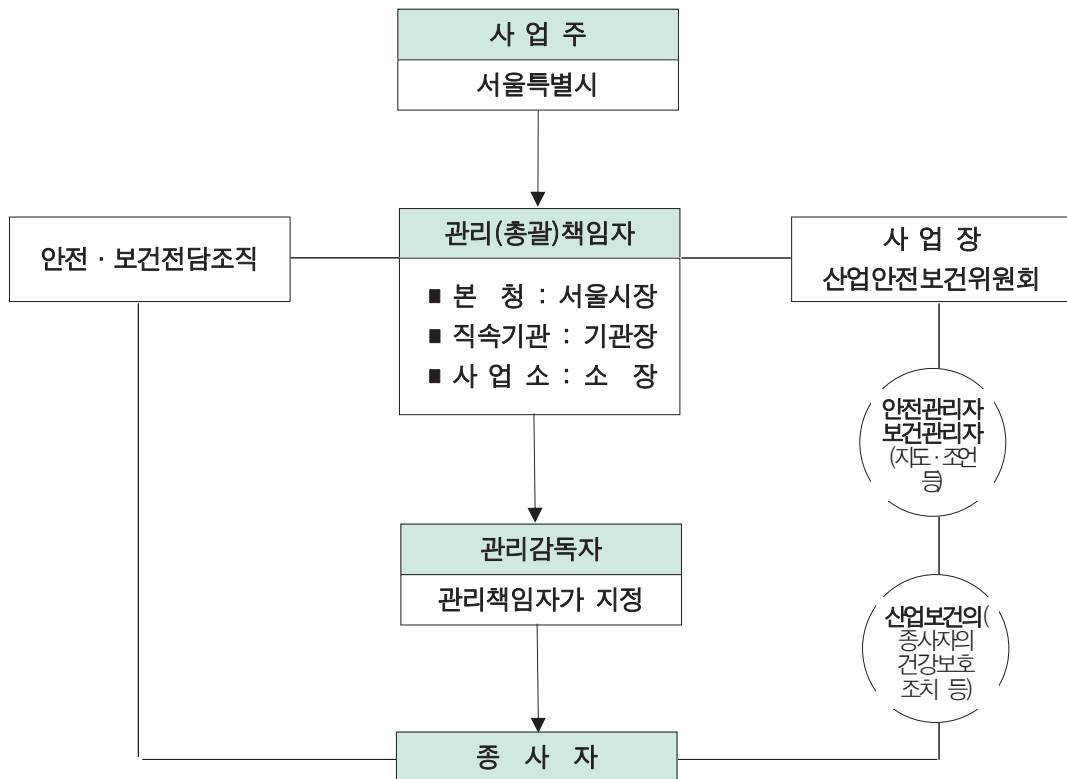
③ 이 규정은 시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 관리조직표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산업재해예방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를 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함(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다.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라.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마. 사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사. 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아.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자. 기타, 제안, 포상, 문서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